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23 선고 2021가합4017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11254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23 선고 2021가합401782 판결

전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암

담당변호사 이태헌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3.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8. 3. 22. 접수 제160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9. 11. 'D 아파트 148.9678㎡형'에 청약해 2006. 10. 12. 당첨된 후, 2009. 11.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망인 앞으로 마쳤다.

나. 망인은 2017. 11.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첫째 아들 E, 둘째 아들 피고, 셋째 아들 B, 넷째 아들 F가 있었으며, 상속지분은 각 1/4이다.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E, B 및 F는 2018. 3. 22.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소유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8. 3.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21. 2. 3. 기준 B에 대하여 합계 842,157,640원의 조세채권(가산금 포함)을 가지고 있다.

순번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귀속	고지세액(원)	체납세액(원)
1	종합소득세	2015. 1. 10.	2016. 4. 30.	2010	2,166,520	3,459,440
2	종합소득세	2015. 8. 10.	2016. 5. 15.	2010	114,934,380	182,687,920
3	종합소득세	2015. 8. 10.	2016. 8. 31.	2014	57,068,030	88,398,200
4	종합소득세	2015. 8. 10.	2016. 8. 31.	2013	107,321,310	166,240,290
5	종합소득세	2015. 8. 10.	2016. 8. 31.	2012	116,031,470	179,732,380

6	종합소득세	2015. 8. 10.	2016. 8. 31.	2011	135,319,580	209,609,710
7	양도소득세	2015. 6. 30.	2016. 8. 31.	2015	7,766,340	12,029,700
합계					540,607,630	842,157,6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3,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상속지분(1/4)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4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사망 전에 망인의 유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인정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망인에 대한 부양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유지관리에 대한 노력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악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하였고, 한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증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B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7 내지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망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8. 1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 거주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후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는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망인을 부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G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매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돌보고 망인의 치매 증상이 심해진 이후에는 망인을 2016. 7.경부터 2017. 11.경까지 ‘H 노인요양원’에 입소시켜 요양치료를 받게 하고 그에 대한 요양비 합계 9,380,36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 망인의 사망 시까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망인을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차남인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게 된 것은 장남인 E이 1982. 10.경부터 2012. 2.경까지 I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등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관리비, 가스료를 피고 또는 피고의 처 J 명의 계좌에서 납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와 같은 피고의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부양과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를 특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의 소유라는 유지를 밝혔고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관리에 특별히 기여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등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기여분으로 하기로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의 기여분이 있을 뿐, B에게는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정환, 판사 서지원, 판사 권가희

별 지 목 록

[집합건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제3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118.91㎡

(대지권의 표시) 37297.2분의 99.59

끝.

